ADNDRC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seoul

결 정 문

사건번호: KR-2300240
신 청 인: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
(대리인 : 특허법인 우인 임승택 변리사)
피신청인: 이정민
분쟁 도메인이름 : jungkwanjang.com

---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 청 인: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23, 7층 (삼성동)
대리인: 특허법인 우인 임승택 변리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57, 중평빌딩 2층

피신청인: 이정민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해안로24길 21-4

분쟁 도메인이름은 "jungkwanjang.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메가존㈜(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5길 46, 메가존빌딩 6, 7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23. 1. 17.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함) 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23. 1. 18.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23. 1. 18.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23. 1. 26.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23. 2. 15. 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23. 2. 15.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23. 2. 17.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정찬모 위원을 행정패널로 선임요청하였고, 2023. 2. 17.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23. 2. 17.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는 전매청과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전신으로 하여 1999년 홍삼 사업 부문이 분리된 법인으로 홍콩, 일본, 대만, 미국, 중국 등 60여국에 홍삼을 수출하고 있으며, 2004년 '정관장'을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확립한 이후 '정관장'을 표장으로 한 다수(국내 45개류 전부)의 상표를 등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피신청인 이정민(JUNG MIN LEE)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임이 확인된다(갑 제1호증의 1).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등록상표 '정관장'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 이전부터 수요자들간에 현저하게 알려진 저명상표이며, 이 사건 도메인이름 "jungkwanjang.com"의 요부는 이와 동일하게 호칭되는바, 출처혼동의 우려가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아무런 정당한 권익이 없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거액의 대가를 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이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는

바 UDRP 제4조 (a)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등록이전되어야 한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UDRP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하에서 그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성

제출된 서면과 증거에 의하면 신청인은 '정관장'이라는 문자상표를 등록하였으며 '정관장'의 영문표현으로 'cheongkwanjang'을 사용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등록한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요부는 'jungkwanjang'이다. 시각적으로 'cheong'과 'jung'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인이 한글의 '정'을 영문표기함에 있어서는 'cheong', 'chung', 'jung' 등이 혼용되고 있는바 일반적인 한국인은 이들이 동일한 한글 표시 '정'에 대응한다고 인식할 것이다. 나아가 'jungkwanjang'에서 'jung'은 3음절중 1음절에 불과하므로 가사 'cheong'과 'jung'을 구별하여 인식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jungkwanjang'과 '정관장'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인정할 것이다. 이에 본 패널은 첫번째 요건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충분한 검토를 하기 어려우나, 일견 피신청인의 이름 등으로부터 '정관장' 또는 'jungkwanjang'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패널은 두번째 요건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은 194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정관장' 브랜드를 사용해 왔으며 이 표장을 부착한 홍삼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정관장' 브랜드는 대한민국브랜드대상을 비롯한 다수의 수상이력이 있고, 그 밖에 신청인이 제출한 언론보도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갑제7호증 내지 제9호증) 이 표장은 국내인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에 해당하므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피신청인이 이와 동일 또는 혼동을 가져올 정도로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사실 자체로도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는데, 피신청인은 여기에서 나아가 'jungkwanjang.co.kr' 이라는 유사 도메인이름도 등록한 것으로 추정되며(갑 제1호증의 2), 이들 일련의 도메인이름을 특별히 사용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대가를 받고 양도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제반 사정으로부터 분쟁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본 패널은 세번째 요건도 입증되었다고 판단한다.

D. 소결

위와 같이 신청인은 UDRP 규정 제4조 (a)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입증하였다.

6. 결정

위와 같은 검토와 판단의 결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jungkwanjang.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1인 행정패널

정찬모

결정일: 2023년 3월 2일